

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경우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97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10월 16일
발 의 자 : 김경우, 추승우, 최 선,
이호대, 장인홍, 채유미,
김제리, 권영희, 장상기,
박순규, 양민규, 전병주,
이준형, 한기영, 오현정,
임종국 의원 (16명)

1. 제안이유

- 「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 개정에 따라 법령에 따른 의무적 출자·출연 및 연례적·반복적 출자·출연 시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일정기간 정하여 출연금을 얻을 수 있도록 함.
- 본 조례 개정으로 연례적 출연동의에 따른 입법 및 행정력 소모를 방지하고 조례해석의 명확성을 기해 정책의 효과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.
- 이에 사전의결 실시를 위한 ‘일정기간’을 정하여, 연례적, 반복적 출자·출연에 대한 동의안 심사를 정비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의3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2년마다 받도록 규정함(안 제11조 개정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, 「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 제목“(출연금 교부)”를“(출연금 교부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의3에 따라 시장은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2년마다 받아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출연금 교부)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1조(출연금 교부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②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 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 조의3에 따라 시장은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2년마다 받아야 한 다.</p>